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조계원 · 권향엽
주철현 · 정일영 · 박용갑
이병진 · 문대림 · 임미애
이광희 · 허성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,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.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,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.

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.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,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,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(안 제10조의2, 제13조의2, 제60조제2호).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수산물공동위판장의 지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을 통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공동위판장”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동위판장은 한 곳으로 하되,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.

제1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수면양식수산물은 공동위판장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2호 중 “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”을 “위판장 또는 공동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이나 내수면양식수산물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수산물공동위판장의 지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에서 내수면양식수산물(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을 통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공동위판장”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공동위판장은 한 곳으로 하 되,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한다.</u>
제13조의2(수산물매매장소의 제 한)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13조의2(수산물매매장소의 제 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수면양식수산물은 공동위</u>

제6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(생략) 2.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<u>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</u> 3. ~ 6. (생략)	<u>판장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.</u> 제6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위판장 또는 공동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이나 내수면양식수산물</u>----- 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--	---